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2015. 8. 13.

금융개혁 자문단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목 차

I. 논의 배경	1
II.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2
1. 국내은행 수익구조	2
2. 수익악화 원인	3
3. 종합평가	5
III.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6
1. 자율성 제고방안	6
가. 금리·수수료·배당 자율화	6
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8
다. 성과평가·면책 활성화를 통한 여신관행 개선	10
라. 해외진출 활성화	11
마. 사회공헌활동 등의 자율성 제고	12
2. 책임성 제고방안	13
가.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	13
나.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감사 기능 활성화	14
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15
IV. 추진계획	16
[참고1]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18
[참고2] 내부감사협의회 개요	19

I. 논의 배경

◆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저성장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낮은 상황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통해 수익기반 및 경쟁력 강화

□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카드사태 이후 '07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금융위기 직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6~9조원 수준에서 정체

* 순이익(조원) : ('03) 1.9 ('07) 15.0 ('09) 6.9 ('11) 8.6[†] ('12) 8.7 ('13) 3.9 ('14) 6.0(上 3.7) ('15.上) 4.3

† '11년 현대건설 주식매각이익(3.2조원) 제외(포함 시 순이익은 11.8조원)

○ 특히, '13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3.9조원)은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태 발생('03년, 1.9조원) 이후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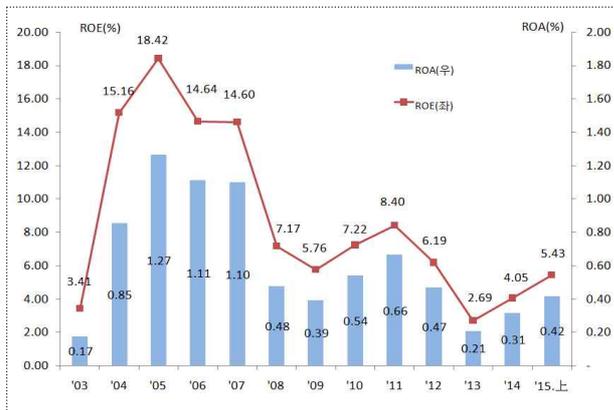
○ 최근 당기순이익('14년 6.0조원, '15.上 4.3조원)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

* ROA('14년 0.31%, '15.上 0.42%)는 과거 10년('04년~'13년) 평균(0.65%) 및 주요국 은행(美 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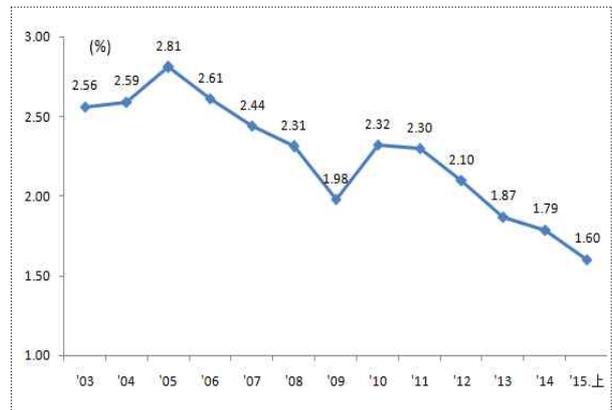
□ 당분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 금리인상, 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확대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수익성 및 실물지원능력이 악화될 우려

<국내은행 ROA 및 ROE 추이>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추이>



II.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은행 수익구조

◆ ① 높은 이자이익 비중(약 90%) ② 판관비 비중 상승

□ 국내은행 총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근접('11년~'15.상반기 평균 86.8%)하여 주요국에 비해 이자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

* 주요국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14년) : 미국 62.8%, 일본 70.3%

○ 자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절대 규모는 지속 감소*

* 이자이익(조원) : ('11년) 39.1 ('12년) 38.0 ('13년) 34.9 ('14년) 34.9 ('15.上) 16.5

○ 특히,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은 총이익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이자이익 감소를 상쇄할만한 대체 수익원 확보에 한계

□ 한편, 총이익 감소 추세에도 인건비 등 판관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확대

* 판관비(조원) : ('11) 20.0 ('12) 20.3 ('13) 20.3 ('14) 21.0(上 10.3) ('15.上) 10.7

<국내은행 수익구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15.上	합계
1.이자이익	39.1 (82.0)	38.0 (89.3)	34.9 (89.6)	34.9 (90.9)	17.3 (89.4)	16.5 (79.6)	163.4 (86.8)
2.비이자이익	8.6 (18.0)	4.5 (10.7)	4.0 (10.4)	3.5 (9.1)	2.1 (10.6)	4.2 (20.4)	24.9 (13.2)
(수수료관련이익)	4.9 (10.3)	4.7 (11.0)	4.5 (11.6)	4.6 (11.9)	2.2 (11.5)	2.5 (12.0)	21.1 (11.2)
(유가증권관련이익)	5.1 (10.8)	2.2 (5.2)	0.9 (2.4)	1.0 (2.5)	0.7 (3.4)	2.0 (9.4)	11.2 (5.9)
3.총이익(1+2)	47.7 (100)	42.6 (100)	38.9 (100)	38.4 (100)	19.3 (100)	20.8 (100)	188.3 (100)
4.판매비와관리비	20.0 (42.0)	20.3 (47.6)	20.3 (52.2)	21.0 (54.8)	10.3 (53.1)	10.7 (51.5)	92.3 (49.0)
5.대손비용	11.6 (24.4)	10.3 (24.2)	11.7 (30.2)	9.2 (24.0)	4.3 (22.1)	4.8 (23.2)	47.7 (25.3)
6.영업외손익	△0.1 (△0.2)	△0.7 (△1.7)	△1.7 (△4.3)	△0.3 (△0.8)	0.1 (0.4)	0.3 (1.3)	△2.6 (△1.4)
7.법인세비용	4.2 (8.8)	2.6 (6.1)	1.3 (3.2)	1.8 (4.7)	1.1 (5.9)	1.2 (5.9)	11.1 (5.9)
8.당기순이익(3-4-5+6-7)	11.8 (24.6)	8.7 (20.4)	3.9 (10.0)	6.0 (15.7)	3.7 (19.3)	4.3 (20.7)	34.6 (18.4)

* ()내는 총이익 대비 비중

2 수익악화 원인

◆ ① 이자이익 부진 ② 수수료이익 정체 ③ 고비용 구조 지속

□ (이자이익 부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이자이익 확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 주로 기인

* 순이자마진(%) : ('11) 2.30 → ('12) 2.10 → ('13) 1.87 → ('14) 1.79 → ('15.上) 1.60

○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수금 조달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하락시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구조*

* '15.3월말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64.5%인 반면, 원화예수금의 고정금리 비중은 92%에 달하여 시장금리 하락시 대출금리가 먼저 하락

-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및 중기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간 자산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금리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되면서 금리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

○ 반면, 美 상업은행들은 높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아* 3%대의 안정적인 순이자마진 유지

* 기준금리와 NIM의 상관관계 : (미국) -0.01 (한국) 0.75[기준금리 하락시 NIM도 하락

□ (수수료이익 정체) 수수료이익은 유가증권관련이익 등 다른 비이자이익에 비하여 안정적이나 '11년 이후 소폭 감소되는 추세*

* 수수료이익(조원) : ('11) 4.9 → ('12) 4.7 → ('13) 4.5 → ('14) 4.6 → ('15.上) 2.5

○ 수수료기반도 방카슈랑스 판매 등 대리사무취급수수료에 치중* 되어 있는 등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모습

* '11년 이후 국내은행의 대리사무취급수수료는 전체 수입수수료의 35% 수준

○ 특히, 미국 등 글로벌 은행의 주요 수수료 수입원인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도 국내은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

* '14년중 美상업은행의 예금계좌 관련수수료(계좌유지수수료, 송금수수료 등)는 비이자이익(2,308억불)의 14% 수준(330억불)

** 국내은행의 경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송금수수료는 비이자이익(예보료, 기금출연료 제외 시 '14년중 7.6조원)의 4.4%('14년중 0.3조원) 수준

<국내은행 수수료 수입 구조>



□ (고비용 구조 지속) 인건비 위주의 비용구조이므로 판매관리비가 경직적이어서 수익성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내은행의 이익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미국 상업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인건비 비중은 미국 수준을 크게 상회

<국내은행의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상
인건비 비중 ¹⁾	국내은행	61.2	60.5	60.5	62.2	64.5
	미국 상업은행	43.8	44.7	45.8	45.5	48.6
이익 경비율 ²⁾	국내은행	42.1	48.4	54.6	55.2	50.9
	미국 상업은행	62.3	62.2	61.8	63.1	61.1

* 주 : 1) 인건비 / 판매비 2) 판매비와 관리비 / (총이익 + 영업외 손익)

3) '15년의 경우, 국내은행은 '15.상반기, 미국은행은 '15.1Q 수치

- 은행권 평균근속 연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경직적인 임금체계 등으로 고임금 구조가 심화되고, 신규고용 확대에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

* 4대 은행 근속연수(남성) : 17.6년, 30대그룹 근속연수(남성) : 12.6년

○ 저수익 점포, 중복점포 정리 등 조직효율화 작업도 더딘 상황

* 국내은행 점포(개) : '13년 7,797 → '14년 7,554 → '15.6말 7,480('13년 대비 4.1% 감소)

3 종합평가

- ◆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형태로 글로벌 은행 대비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향후 이익증가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 은행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기반 다변화를 통해 대출 위주 자산성장형 영업행태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

- 국내은행은 예대마진 위주의 자산성장형 영업형태를 고수함에 따라 대출쏠림 현상도 지속
 - 또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향후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상황
 - * '14년 ROE : (한국) 4.05% (미국) 8.94%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글로벌 은행은 수익성 개선 및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영업모델·전략 수정 등을 통해 변화 모색
 - 최근 국내 주요은행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별 차별화는 미흡한 수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 영업행태의 변화>

- 바젤Ⅲ 도입 등 규제강화로 규모 확대보다는 비용절감 및 비핵심 사업 매각, 리스크 관리 등 자구노력과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에 주력
 - 웰스파고는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산운용 수요에 부응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수료 기반 확대
 - 유럽계 은행은 해외사업에 대한 선택적 축소를 시행한 반면, 일본계 은행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
- 그 결과 국내 은행권은 국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고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도 미약
 - The Banker誌 발표(15.7. 기본자본 기준) 50위권 은행에 우리나라 은행은 없음 →경제규모(GDP)가 유사한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 브라질 2개, 이탈리아 2개, 캐나다 3개, 호주 3개, 한국 0개(산업은행 62위)

Ⅲ.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 기본 방향 〉

- ◆ 국내은행이 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와 대출쏠림 현상 등 자산성장형 일변도 영업모델을 개선·극복
- ◆ 은행은 비용구조 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금융당국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
 - 이와 함께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

1 자율성 제고방안

- ◆ 합리적 결정 시스템에 근거하여 수수료·금리 등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도 근절
- ◆ 新수익원 발굴, 여신관행 개선, 해외진출 등을 위한 규제 완화
- ➔ 은행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가 금리·수수료·배당 자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금리·수수료 등 은행의 가격결정은 명료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약하고, 은행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온 경향

① (금리) 그동안 기준금리 하락 폭만큼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해 온 결과 순이자마진(NIM)이 해외은행 대비 매우 낮은 상황*

* 순이자마진('14년) : 한국 1.79%, 미국 3.12%

- 은행간 대출확대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별은행에서 금리가 적정 원가를 반영하기 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이 우선시된 측면

- 한편, 금융당국이 점검*하거나 지도(예: 연체 가산금리 상한인하, '14년)함으로써 가격통제 관행이 일부 지속된 점도 영향

* 예) 외담대 취급시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게 금리우대(0.1~0.3%) 권고

② (수수료) 다른 은행과의 경쟁, 고객이탈 방지 등 마케팅 차원에서 폭넓은 수수료감면 관행 등의 결과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고,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Herd Behavior)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약자 배려 요구 등 여론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해 온 사례도 작용*

* 예 : '11년 ATM인출·송금 수수료 인하 등

□ 배당도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배당자제 지도 관행

- 배당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경영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한 측면

* 평균 이상 배당성향을 보이는 은행에 대해 배당금액을 낮추도록 유도

【 개선방안 】

□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자율성을 갖고 결정·운영하는 금융관행을 확립

- ① 금융회사가 가격변수를 결정·운영함에 있어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카드 수수료 등)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 '행정지도 운영규칙(금융위 고시)'에 따라 행정지도(서면원칙, 구두예외)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기간을 거친 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사전보고 하고 금융규제포털에 등록

- ② 금융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보전하거나 수익구조 개편 목적만으로 금리·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체계하에서 조정

- ③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 배당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관여없이 관련 법적절차(주주총회 등)를 통해 결정하며,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바젤Ⅲ등 국제기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자본 유지 필요
- 그 동안 상기 원칙에 위배되는 그림자 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대외 공표(금융회사에도 개별통보하며, 관련질의시 즉시 회신)

⇒ 상기 원칙을 「금융규제운영규정」(금년중 제정)에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근거없는 행정지도나 구두개입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

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열거식(Positive 방식)으로 규정
 -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금융위 신고를 통해 시장수요에 맞게 탄력적 대응이 가능(Negative 방식)

<은행 업무의 종류>

	업무 내용	규율방식
고유업무	은행만 영위가능한 업무 * 수신·여신·환업무 등	Positive방식
부수업무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채무보증,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지급대행, 대한주택보증상품 판매대행 등	Negative방식(신고제) * 열거된 업무는 신고 불요
겸영업무	① 他금융업법상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업무 * 파생결합증권 매매, 채무증권 인수·매출,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신용카드업 등 ② 他법상 은행에 허용된 업무 *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③ 비본질적 금융업무(기타 금융업무) *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주선, 증권의 투자 및 대차 거래 업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등	Positive방식(신고제)

- 비본질적 겸영업무(기타 금융업무)도 열거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은행의 기존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한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

* 겸영업무 중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서, 현재는 Positive 규제방식에 따라 겸영업무로 열거된 기타 금융업무만 영위 가능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 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시 대응이 어려움

【 개선방안 】

- 금융서비스 혁신 유도 및 수익다변화 지원 차원에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

- 다만,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금융업권간 땅따먹기” 이슈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고려

- 새로운 부수업무 신고 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즉시 시행)

-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

* 미국은 ‘판례상 정립된 기준’에 부합되면 부수업무로 인정

- : ① 어떠한 부수업무가 전통적으로 인정된 은행의 고유업무와 기능적으로 동일하거나 논리적인 연장선상에 있어야 함
- ② 동 업무가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고 은행의 건전성도 제고
- ③ 동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위험은 은행들이 고유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

-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네거티브化하거나, 부수업무와 통합 규율함으로써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방안 마련(은행법령 개정사항)

- 현행 비본질적 겸영업무의 경우 부수업무와 은행업 관련성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허용여부 판단 기준인 소극적 요건*은 동일

* i) 은행 건전성, ii) 이용자 보호, iii)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 성과평가면책 활성화를 통한 여신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금융 등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등에 안주
 - 이에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내부관행 개선' 추진 중('15.1.~)

은행의 내부관행 개선방안

- 직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 '15년도부터 KPI에 기술금융 관련 항목을 반영하여 평가
- 여신 부실화시 책임 부과 시스템 개선: 면책대상 규정방식의 전환 (Positive→Negative), 면책 체크리스트 작성, 제재시효제도 운영

- 국내은행의 성과평가·면책 개선 추진현황 점검('15.4월) 결과,
 - 국내은행은 기술금융 취급 관련 실적을 '15년 상반기부터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
 - 17개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완료
 - *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3개 항목(①규정·절차 미준수, ②고의·중과실 부실 신용조사 등, ③금품제공 등 부정행위 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책
 - 다만, 제재시효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기간경과 등 부작용 논란으로 일부 은행만 운영 중
 - * 여신 취급(최초 취급, 기한연장, 재대출, 대환 등 포함)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위법·부당행위 종료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책임면제

【 개선방안 】

- 은행 내부 제재시효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감원의 검사 대상기간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운영하며,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
 - 다만, 소송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재시효 적용대상에서 제외

라 해외진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소관)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외국법인에 지분 10% 이상 투자, 외국영업소 설치·확장을 위한 자금지급 등
 - ** 신고사항 타당성 검토 후 신고수리 여부 결정 → 송금 이전에 신고수리 완료 필요
- 「은행법」상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지점·사무소 신설·폐쇄시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후보고(예외적*인 경우 사전신고 필요)
 - * (예)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력과 상관없이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 * 원칙적으로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별로 내부통제 전담직원을 임명해야 함
- 해외진출시 한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 제시가 필요하나 ‘인가증’ 발급근거 부재
 - * 현재 현지 감독당국의 은행업 인가증빙 요구에 과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공문(번역 후 공증) 또는 금감원의 사실확인 공문(영문)을 제출하는 상황

【 개선방안 】

- 「은행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신고·보고 등을 거치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를 사전→사후 보고로 규제 완화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수출·수입 대비 5% 내외* 수준이며 은행은 별도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만큼, 사후보고를 통해서도 대외 거래 안정 등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목적 달성 가능
 - * '14년중 대외거래(역불): 수출 6,215, 수입 5,287, 해외직접투자 306, 외국인국내투자 99
-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현지법인의 경우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겸직을 허용(유권해석)
- ‘은행업 인가증(국·영문)’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국·영문)’ 서식 마련(「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마 사회공헌활동 등의 자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 등 금융권은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일부 공익 기능 수행

① 사회공헌활동의 수행 또는 공익단체(청년창업지원펀드 등) 출연

* 은행권 기부금 현황(억원) : (12) 4,258, (13) 3,739, (14) 2,827

②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시 금리감면, 만기연장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기능 수행

* 예 : 구미 불산누출사고, 조류독감, 집중호우 피해복구, 취약계층용 대출 및 보험상품 등

③ 정책금융상품의 출시·취급을 통해 정책취지의 시장 확산

* 예 : 월세대출, 사회적기업대출, 채무조정적격대출, 재형저축펀드, 동산담보대출 등

□ 공익적 기능 수행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금융의 특성과 금융 위기 이후 사회적 책임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

○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

【 개선방안 】

① 금융권의 공익적 기능 수행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시행 규모 등에 있어 자율적 경영 판단원칙을 기반으로 추진

② 정책금융상품의 출시·취급 유도할 경우 수요조사, 관련기관 협조 등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병행

③ 과도한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은 지양

➔ 객관적 외부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의 안착 노력을 지속

2 책임성 제고방안

- ◆ 금융개혁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만큼 금융회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
-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법규위반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기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검사 대상으로 모니터링 (외부통제위주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틀을 전환)

가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그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외형상 양호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지속
 - 이는 성과중심의 경영기조 및 보상체제로 내부통제를 등한시하는 조직문화가 여전히 팽배하고,
 - 내부감사 기능과 준법감시인의 역할* 불명확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데 기인

* 내부통제의 1차적 단계 업무인 영업점의 준법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
- **[개선방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7.31일)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권한을 강화
 - *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하고, 타 업무의 겸직금지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
 -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반기)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참고 1)

- 준법감시인 업무를 내부통제 관련 통할업무로 하여 소관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현황 등 공시

- 금융당국-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업계에 전파

나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감사 기능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금융권역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진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점검대상을 협의하여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자체 연간·분기별 감사계획에 반영·운영(☞ 참고 2)

** '14년 중 금융회사가 총 27개 점검분야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567건의 개선·시정 등 조치

- 다만, 자체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발견

개선 필요사항

- 일부 금융회사가 모든 점검분야에 대해 적정하다고 자체 평가하는 등 자체감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
-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결과 모범사례 등에 대한 업계 전파 미흡
- 금융회사가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실태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

- **[개선방안]** 모범사례 전파, 부문검사 실시 및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

- 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우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하여 재점검을 요청하고, 필요시 부문검사를 통해 자체감사의 적정성을 점검
- ② 반복된 지적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대상 선정시 동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시정을 유도

* 해당연도중 신규로 업데이트된 반복지적사항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 ③ 내부감사협의회 모범·우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권역별 특성 및 실정에 맞게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운영

* 검사주기 완화,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제외 또는 검사기간 축소, 경영 실태평가지 반영, 자체조치 사항의 불문 처리 및 포상 제공 등

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가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내어 금융정보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상품별 공시 등 제공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견제하는 시장감시 기능 확충

- ①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기준을 점검하여 은행간 공시의 통일성·일관성을 제고*하고 공시대상 범위도 확대(마이너스대출 추가)(은행연합회 공동)

*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내부등급을 공시등급과 매핑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부도율 기준으로 등급을 매핑하여 은행간 비교가능성 확대

- ② 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에서 이용자가 소비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일 코너를 개설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정한 민원신청,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필수 공시항목으로 구성

- ③ 복잡한 경영통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핵심정보 위주로 선정(8개 내외)하고 은행별로 요약 비교하여 제공(금감원 홈페이지)

< 은행권의 핵심 경영통계 공시(예시)>

금융회사명	기초 재무정보				주요 경영지표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ROA	NIM
OO은행								
OO은행								

IV. 추진계획

- ① 유권해석 등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시행
 - ① 은행의 가격결정(금리·수수료·배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즉시 실시
 - ② 은행이 신규 부수업무를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석·수리
 - ③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는 유권해석을 통해 즉시 실시

- ② 하반기중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작업 추진
 - ① 향후 금융당국 직원들이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 마련시 내부규율 근거도 마련
 - * 규제개혁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 (위반시 조치사항도 포함)
 - ②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행정지도로 공식 등록 운영)
 - ③ 내부감사협의회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마련 및 모범사례 전파
 - ④ 은행권 대출금리 비교공시 범위 확대

- ③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①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은행법)
 - ② 제재시효제도 도입(관련 법령 또는 제재규정)
 - ③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사항을 사후신고로 전환(외국환거래법)

<향후 추진일정 및 조치사항>

주요 과제내용	추진 일정	조치사항	소 관
① 자율성 제고방안			
① 수수료·금리·배당 자율화 -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	'15.9월	규정 제정	금융위
②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신수익원 개발 -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 해석 -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제방식 전환	즉시 중장기	은행법령개정	금융위 금융위
③ 성과평가·면책 활성화를 통한 여신 관행 개선 - 제재시효제도 정착 - 검사대상기간 축소(5년이내)	중장기 즉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금융위 금감원 금감원
④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은행 해외투자 보고요건 완화	하반기	외국환거래 법령개정	기재부 금융위
⑤ 사회공헌활동의 자율성 제고 - 출연 등에 대한 자율적 판단·협조	즉시		금융위 금감원
② 책임성 제고방안			
①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15.9월	행정지도 등록	금감원
② 내부감사협의회 활성화 - 내부통제 모범사례 전파 등 - 내부감사협의회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15.9월 '15.12월	워크숍 개최 금감원 자체 조치	금감원 금감원
③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 은행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코너 개설 - 소비자에 맞는 핵심 경영정보 제공	'15.9월 '15.9월 '16.1월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

참고1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 및 ②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는 지배구조법에 기반영
→ 시행일(공포 후 1년) 이후 적용 예정(경과조치)

①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 격상

-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외은 지점은 예외 허용)하고 임기(2년 이상)를 보장
 - 준법감시인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현행 대비 2단계 완화
 - 또한, 준법감시인은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가능

②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

-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
 -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하여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도를 제고
 - * 자산운용, 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

③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준법감시인의 정의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자”로 하여 내부통제 책임주체를 명확화
 - * 준법감시프로그램(자점검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관련업무 명확화
 - 자점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권 일부를 준법감시인에게 부여
 -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

④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권고
 - 은행장(대표이사)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분기 1회 이상 개최
 - 금융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상정·논의

참고2

내부감사협의회 개요

- '14년 금감원은 한정된 검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협의회”를 도입
- 금융회사가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취약분야에 대해 스스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시정 등 지도
- ① **(자체 점검대상 선정)** 각 검사부서는 내부감사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
- ② **(점검표 마련)** 분기별 점검대상의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방식 등을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점검표(Check List) 마련
- ③ **(내부감사 실시)** 금융회사는 동 점검대상을 연간·분기별 자체 감사 계획 등에 반영하여 내부감사 실시
- ④ **(감사결과 접수)** 금융회사는 정기적(분기)으로 내부감사 결과 및 자체 조치계획(예정)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분기 익월말까지)
- ⑤ **(이행결과 확인)** 검사부서는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시정하도록 지도(익 분기중)
- ⑥ **(결과보고)** 검사부서는 소관금융회사의 분기별 내부감사협의회 이행 실적을 종합하여 자체보고(익분기말까지)

내부감사협의회 흐름도

